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판 의 장	
공	
람	



제 751 호 2012. 4. 19(목)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2012-384호[울 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48호[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화봉지구쌍용예 가)승인 고시] 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49호[도로명주소 고시] 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50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1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06호[울 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2

회								
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호


2012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을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사·락·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가”를 “시립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하며, 제2항 중 “자의”를 “사·락·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기”를 “사·립·이”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나부 “성희롱”은 “성희롱·성내마”로 하고, 나부을 나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부를 나름과 같이 신설하며, 미고단은 나름과 같이 한다.

※ 위의 경드 및 비의 충돌/- 드하고 고의/- 익
비의의 우회
※ 충돌 우회는 경인
경우

※ 경드 우회는 경인이나 비의 경드 우회는 경인이나 경인
경우

※ 응수우회

별표 5의 관용

※ 참고: 제7호에서 "선회통"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회통을 말하며, "심폐대"란 「심폐대응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심대개를 말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벤치와 간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제·취소)

부 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유 등을 수수하고, 우선·부당한 저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유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저분을 한 경우	
	수동	동동	수동	동동
100만 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중징계 · 중징계	중징계 (성가상습식인 경우 : 해임·파면)		해임·파면
300만 원 이상	중징계			

[별표 5]

음주운전 정계기준(제2조제1항, 제7조 제·련)

유 형 별	정계요고 (기준기준)	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정계	선택-간봉	<p>1. 음주·후·점이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여 음주 한 것을 말한다.</p>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증상계	간봉-정직	<p>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주 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분용으로 운전면허가 주소된 경우를 포함한다.</p>
		심봉-성식	<p>3. “증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 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공·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성실 등 완치 가능성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그상·질병을 말한다.</p>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증정계	증직-강등 해임-폐면	<p>4. 운전직업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정지 : 6·정지 - 면허취소 : 식권면식 또는 증정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증자-폐면	
음주운전으로 인직·굴조 피하기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증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증·식-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우리 시의 부부폐·청렴대책을 근거로 성매매 징계기준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
-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 가. 성매매와 음주운전이 징계기준에 포함됨 (별표 1 제7호)
 - (현행) 성폭력, 성희롱 → (개정)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벌기준 강화 (별표 4)
 - 의례적인 경우 : (현행) 경징계 ⇒ (개정) 중징계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현행) 경징계 ⇒ (개정) 중징계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현행) 중징계 ⇒ (개정) 해임·파면
- 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별표 5)
 - 음주운전 1회 적발 : (현행) 경고 ⇒ (개정) 징계·감봉
 - 음주운전 2회 적발 : (현행) 경·중징계 ⇒ (개정) 정직·강등
 - 음주운전 3회 적발 : (현행) 중징계 ⇒ (개정) 해임·파면

*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음수운전횟수 산정·적용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2-4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화봉쌍용예가)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스북(주) 대표 손동환이 A 현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은 지 16주 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계획변경승인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시행시

1) 사업의 등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시트(주) 대표 손영환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3번지

二 사업개요

사업종류	구 분	승 인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마지연적	51,031.90㎡	51,031.90㎡		
기초면적	10,105.32㎡	10,239.98㎡	변경	
면적	74,025.96㎡	73,967.97㎡	변경	
건폐율	19.80%	20.07%	변경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115.13%	115.04%	변경
기획변경승인	동수(주/구)	16동/8동	16동/8동	
	세대수	487세대	487세대	
	시 응 비	164,081,064천원	143,578,003천원	변경
	사업기간	2012.3 ~ 2013.11	2012.5 ~ 2013.12	변경
주택활별	일반 민영아파트	일반 민영아파트		

2. 사업시행기간 : 2012. 05 ~ 2013. 12

3. 법률에 의한 민·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동법 제9조 「건축신고」, 동법 제15조 「기술건축물 허가·신고」, 국도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에 관한 금사사항의 허가」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관할부서 의회·의회·의회 치리원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고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전관계인에게 누운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4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32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시적과 (☎052-219-72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a.go.kr)에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미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지자)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빙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수·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동 관계의 공동 험프팅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 조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2 - 50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선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73-1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5	산성로 73	산성로 73-1	2012. 4. 23	지번분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에 둍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사수수 안내 홈페이지(www.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판례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미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삼세주소는 공법 판례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주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실태 심검결과 나타난 소상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 공휴일 확인증 발급지연 등 주민불편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 일부를 수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제1항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관련 단서부분 추가
 - 별지2호 시식 변경
 - 별지2-1호 시식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환경미화과장, 전화:052-219-7384, FAX:052-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일부 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75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2-1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